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6. 4. 27.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근 택



# 목 차

<b>I . 개요</b>	<b>3</b>
<b>II . 일반회계</b>	<b>4</b>
1. 예산규모	4
2. 세입예산	4
3. 세출예산	19
<b>III . 특별회계</b>	<b>33</b>
<b>IV . 주요사업</b>	<b>35</b>
1.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5
2.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38
3. 지방채 발행	41



# 1

# 개 요

## 1. 제안경위

-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 제출일(접수일) : 2026.4.17.(2026.4.22.)
-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편성배경

-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대외 수출여건 악화
-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어려움 가중
- 정부는 추경편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K-패스 환급 확대 등 서민경제 안정망 강화
- 道는 정부추경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사업 지원

## 3. 편성규모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억 원)

구 분	'26년 본예산(A)	'26년 1회 추경(B)	증감액(C= B - A)	%	비 고
합 계	400,577	416,813	16,236	4.06%	
일반회계	357,244	373,377	16,133	4.52%	
특별회계*	43,333	43,436	103	0.24%	

\*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2

## 일반회계

### 1. 예산규모 : 37조 3,377억 원(본예산 대비 1조 6,133억 원↑)

#### < 증 감 내 역 >

(단위 : 억 원)

세 입	16,133	세 출	16,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수입</li> <li>■ 세외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444, 부담금 0.3</li> <li>■ 지방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10</li> <li>■ 국고보조금 등</li> <li>■ 지방채</li> <li>■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594,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li> <li>444</li> <li>10</li> <li>13,094</li> <li>1,978</li> <li>6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의무적 경비</li> <li>■ 국고보조사업 고유가파해지원금 11,335, THE 경기패스 858 등</li> <li>■ 재무활동 순환경제 11</li> <li>■ 용도지정사업 환승할인 634,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13 등</li> <li>■ 행정운영경비</li> <li>■ 자체사업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15,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li> <li>14,753</li> <li>11</li> <li>647</li> <li>0</li> <li>722</li> </ul>

### 2. 세입예산

#### 가. 총괄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6년 본예산(A)	구성비	'26년 1회 추경(B)	구성비	증 감 (C=B-A)	증감률 (C/A)
계	357,244	(100%)	373,377	(100%)	16,133	4.5%
지방세수입	160,633	(45.0%)	160,633	(43.0%)	-	0.0%
세외수입	9,952	(2.8%)	10,396	(2.8%)	444	4.5%
지방교부세 등	68	(0.0%)	78	(0.0%)	10	14.7%
국고보조금 등	165,797	(46.4%)	178,891	(47.9%)	13,094	7.9%
지방채	5,202	(1.5%)	7,180	(1.9%)	1,978	38.0%
보전수입 등	1,020	(0.3%)	1,614	(0.4%)	594	58.2%
내부거래	14,572	(4.1%)	14,585	(3.9%)	13	0.1%

## 나. 지방세 수입

- '26년 제1회 추경 시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음.
- 지방세의 75%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부동산경기와 경제동향에 민감한 특성을 보임**
  - '26년도 2월까지 경기도 부동산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72,213건) 6,119건 (8.5%)이 증가하여 78,332건을 기록하여 경기도 부동산 거래현황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임.
  - 경제동향은 조사기관에 따라 1.6~1.9%로 전망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실질GDP 성장률은 1.0%, 2026년은 1.9%로 전망하였음.<sup>1)</sup>
  - 4월 14일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6)<sup>2)</sup>에서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여전히 1.9%로 제시하였으나,
  -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지배적으로 봄.
- 2026년 2월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을 전년도 2월과 비교해 보면, 2,036억원 부족하게 징수되었음. 지방세 징수실적을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현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준하거나 전년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 향후, **정밀한 세수 추계 및 부동산경기와 경제동향을 면밀히 살펴 보수적인 수입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됨.

1)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主)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

<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26년 2월말 기준)<sup>3)</sup> >

(단위 : 억 원)

구 분	2026년		2025년			전년대비 징수증감액 (2월까지) (A-B)
	목표액 (기정액)	징수액 (2월까지) (A)	목표액 (최종예산액)	징수액 (2월까지) (B)	징수액 (최종액)	
계	160,633	28,069	153,055	30,105	153,615	△2,036
취득세	81,510	13,479	77,390	12,455	78,473	1,024
등록면허세	6,457	1,103	6,471	1,144	5,534	△41
레저세	4,613	705	4,567	749	4,238	△44
지방소비세	40,086	9,076	38,413	11,995	38,164	△2,919
지역자원시설세	5,333	61	5,203	110	5,198	△49
지방교육세	21,512	3,239	20,121	3,175	20,824	64
지난년도 수입	1,122	406	890	477	1,184	△71

< 부동산 거래 현황('24년 ~ '26년 2월)<sup>4)</sup> >

(단위 : 건)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총계	2월까지	총계	2월까지	2월까지
경기도(계)	508,172	75,373	502,489	72,213	78,332
공동주택	282,499	40,420	308,391	41,674	48,775
개별주택	11,178	1,633	10,499	1,390	1,731
토지	137,557	21,805	125,013	19,310	19,200
비주거용 부동산	76,938	11,515	58,586	9,839	8,626
전국(계)	1,913,768	293,937	1,869,690	273,648	300,994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 토지(순수토지) / 비주거용부동산(상·공업용 등)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3번 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3번 나.

## 다. 세외수입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9,952억원) 대비 444억원 증가한 1조 396억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44억원, 부담금 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단체간부담금 444억원은 버스업체 및 수도권 3개 전철기관 환승할인 지원금 증액편성에 따른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임.

## 라. 지방교부세 등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68억원) 대비 10억원 증가한 78억원임.
-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68억원으로 '25년도 본예산 650억원 대비 582억원 감소(89.4%↓) 하였는데, 경기 본청은 '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sup>5)</sup>로 전환되었으며,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전분을 보통교부세로 교부받고 있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보통교부세로 '25년까지 불교부단체<sup>6)</sup>에 교부하였고, '26년부터는 불교부단체에게 '분권교부세 보전분'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경기 본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급이 중단됨.
-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국세징수실적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4조 5,390억원을 증액편성, 경기 본청 및 성남시 등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에 3,202억원을 교부하였음.<sup>7)</sup>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76%P 인상한 22%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P 인상한 24.24%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반대 뜻을 펼치고 있음.

5)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2025.3. 행정안전부)

6) '23~'26년 불교부단체 : 서울 본청, 경기 본청, 성남, 화성(2026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행정안전부)

7) 2026년도 보통교부세 제1차 추경분 교부결정 통지(행정안전부 교부세과-770, 26.4.11.)

- 지방교부세의 교부세율 인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경기 본청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국고보조금 등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6조 5,797억원) 대비 **1조 3,094억원 증가한 17조 8,891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조 2,608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21억 원, 기금 365억 원을 증액 편성함.
- 국고보조금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 편성내역 금액은 국·도비 포함 세출예산액 증감액으로 작성하였음.

#### 바. 지방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5,202억원) 대비 **1,978억원 증가한 7,1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였음.
- 고유가 피해지원금 1,259억원, THE 경기패스 198억원 등 지방채 증액 편성 사업은 95건이며, 양평 강하-강상 도로확포장 10억 등 감액 편성 사업은 3건임.
- '26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367억원<sup>8)</sup>이며 '26년 본예산 5,202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978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7,180억원 발행 예정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9,367억원) 대비 77% 규모임.
- 부족한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 2025년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26년 제1회 추경까지 발행될 지방채 총액은 1조 6,610억원임.

8)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총칙(P5)

< 총채무 세부내역<sup>9)</sup> >

(단위 : 억원)

구 분	'25년말 잔액(A)	'26년도 증감액			'26년 잔액(B)	비 고
		소계(a-b)	발행(a)	상환(b)		
지방채 발행액	9,430	7,180	7,180	-	16,610*	

\* '26년 제1회 추경 발행 예정액도 포함

< '26년도 본예산 지방채 발행 현황<sup>10)</sup> >

(단위 : 억원)

구 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 기준)
합계		5,202	
1	도로정책과	170	광주 실촌-만선 도로확포장(지방채)
2	도로정책과	139	광주 도척-실촌 도로확포장(지방채)
3	도로정책과	53	남양주 와부-화도 도로확포장(지방채)
4	도로정책과	15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확포장(지방채)
5	도로정책과	130	양주 장흥-광적 도로확포장(지방채)
6	도로정책과	152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지방채)
7	도로정책과	108	양평 강하-강상 도로확포장(지방채)
8	도로정책과	79	화성 장지-용인 남사 도로확포장(지방채)
9	도로정책과	25	연천 옥계-상리 도로확포장(지방채)
10	도로정책과	34	김포 운양-하성 도로확포장(지방채)
11	도로정책과	200	양주 부곡-부곡 도로확포장(지방채)
12	도로정책과	72	이천 백사-여주 흥천 도로확포장(지방채)
13	도로정책과	40	파주 금릉-조리 도로확포장(지방채)
14	도로정책과	93	안성 성환-입장 도로확포장(지방채)
15	도로정책과	107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지방채)
16	도로정책과	108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지방채)
17	도로정책과	80	안성 공도-양성(1) 도로확포장(지방채)
18	도로정책과	115	안성 고삼-삼죽 도로확포장(지방채)
19	도로정책과	49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지방채)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9번-가-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8번-가

(단위 : 억원)

구 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 기준)
20	도로정책과	200	남양주 진건-오남 도로확포장(지방채)
21	도로정책과	100	파주 월릉-광탄(1) 도로확포장(지방채)
22	도로정책과	14	연천 두일-석장 도로확포장(지방채)
23	도로정책과	43	여주 처리-우만 도로확포장(지방채)
24	도로정책과	70	광주 무갑-광동 도로확포장(지방채)
25	도로정책과	15	용인 완장-서리 도로확포장(지방채)
26	도로정책과	10	화성 발산-수면 도로확포장(지방채)
27	도로정책과	10	이천 관리-광주 유정 도로확포장(지방채)
28	도로정책과	10	이천 금당-선읍 도로확포장(지방채)
29	도로정책과	10	안성 양기-양지 도로확포장(지방채)
30	도로정책과	10	용인 유운-매산 도로확포장(지방채)
31	도로정책과	10	파주 방축-양주 비암 도로확포장(지방채)
32	도로정책과	8	안성 일죽-도계 도로확포장(지방채)
33	도로정책과	21	화성 갈천-오산 가수 도로확포장(지방채)
34	도로정책과	19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포장(지방채)
35	도로정책과	26	광주-양평 도로확포장(지방채)
36	철도건설과	159	옥정-포천 광역철도(지방채)
37	철도건설과	169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지방채)
38	하천과	60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39	하천과	78	김포 가마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40	하천과	159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41	하천과	10	안성 청룡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42	하천과	58	포천 왕숙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43	하천과	52	양평 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44	하천과	21	양평 중원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45	하천과	53	김포 나진포천 하천환경조성사업(지방채)
46	하천과	39	가평 조종천(상면지구) 고향의 강 사업(지방채)
47	하천과	52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48	하천과	8	용인 매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49	하천과	53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50	하천과	57	파주 문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단위 : 억원)

구 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 기준)
51	하천과	65	양주 청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52	하천과	54	양주 청담천(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53	하천과	72	수원 원천리천(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54	하천과	10	군포 반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55	하천과	13	여주 내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56	하천과	10	시흥 은행천(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57	하천과	30	하남 초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58	하천과	10	하남 감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59	하천과	10	시흥 장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0	하천과	36	파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1	하천과	15	포천 금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2	하천과	15	안성 한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3	하천과	20	성남 운중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4	하천과	3	광주 신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5	하천과	30	포천 추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6	하천과	33	양주 상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7	하천과	35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8	하천과	12	양주 입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69	하천과	23	남양주 구운천 송천1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70	하천과	5	남양주 마석우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71	하천과	29	여주 부평천 지방하천개수사업(지방채)
72	하천과	51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73	하천과	6	포천 왕숙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74	하천과	13	양평 중원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75	하천과	28	김포 나진포천 하천환경조성사업(지방채)
76	하천과	24	가평 조종천(상면지구) 고향의 강 사업(지방채)
77	하천과	45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78	하천과	3	용인 매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79	하천과	55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80	하천과	38	파주 문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81	하천과	0.4	군포 반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단위 : 억원)

구 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 기준)
82	하천과	10	여주 내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83	하천과	40	시흥 은행천(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84	하천과	100	하남 초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85	하천과	10	하남 감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86	하천과	20	시흥 장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87	하천과	30	파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88	하천과	5	포천 금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89	하천과	15	안성 한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90	하천과	192	용인 동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91	하천과	33	성남 운중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92	하천과	24	광주 신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93	하천과	14	포천 추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94	하천과	4	양주 상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95	하천과	12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96	하천과	15	양주 입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97	하천과	6	남양주 마석우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98	청소년과	56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지방채)
99	국제통상과	450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국가직접지원)(지방채)

< '26년도 1회 추경 지방채 발행 예정액<sup>11)</sup> >

(단위 : 천 원)

구 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 기준)
합 계		197,815,005	
1	도로안전과	1,126,000	비점오염저감 시설설치 시설비(지방채)
2	도로정책과	986,000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건설(지방채)
3	도로정책과	60,000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건설(지방채)
4	도로정책과	9,000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건설(지방채)
5	도로정책과	-986,000	양평 강하-강상 도로확포장(지방채)
6	도로정책과	-60,000	양평 강하-강상 도로확포장(지방채)
7	도로정책과	-9,000	양평 강하-강상 도로확포장(지방채)
8	공정경제과	17,976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지방채)
9	광역교통정책과	19,800,000	The 경기패스(지방채)
10	버스관리과	360,750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지방채)
11	버스관리과	733,500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지방채)
12	버스정책과	645,334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지방채)
13	기후환경관리과	800,00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지방채)
14	산림녹지과	23,814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지방채)
15	산림녹지과	534,000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성립전)(지방채)
16	산림녹지과	65,385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지방채)
17	농업정책과	75,000	농촌공간정비(지방채)
18	친환경농업과	3,60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지방채)
19	친환경농업과	100,000	가뭄대비 용수개발(지방채)
20	친환경농업과	52,500	지하수자원 관리(지방채)
21	해양수산과	19,500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지방채)
22	도시재생과	1,917,28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지방채)
23	주택정책과	211,50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지방채)

(단위 : 천 원)

구 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 기준)
24	관광산업과	20,000	문화관광축제 지원(지방채)
25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6,600	방재(소방·방법)시설물 유지관리(지방채)
26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65,505	국가유산 CCTV개선 1차(지방채)
27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300	국가유산 CCTV개선 1차(지방채)
28	문화유산과	8,112	국가지정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지방채)
29	문화유산과	316,777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지방채)
30	문화유산과	87,750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지방채)
31	문화유산과	74,250	국가지정유산 보존기반 구축(지방채)
32	문화정책과	59,653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지방채)
33	체육진흥과	67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지방채)
34	청소년과	2,696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지방채)
35	감염병관리과	450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지방채)
36	보건의료정책과	4,300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의사업(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지방채)
37	보건의료정책과	300,000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지방채)
38	응급의료과	288,300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지방채)
39	의료자원과	25,000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방채)
40	의료자원과	4,200,000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지방채)
41	의료자원과	137,500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지방채)
42	정신건강과	150,000	안산마음건강센터 지원(지방채)
43	장애인복지과	3,600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지방채)
44	장애인복지과	104,758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지방채)
45	장애인복지과	81,318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지방채)
46	장애인복지과	205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지방채)
47	장애인복지과	27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지방채)
48	장애인복지과	1,092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지방채)

(단위 : 천 원)

구 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 기준)
49	장애인복지과	57,60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지방채)
50	북부안전특별점검단	500,0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지방채)
51	북부안전특별점검단	350,000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지방채)
52	가족정책과	5,97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지방채)
53	가족정책과	326,400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지방채)
54	고용평등과	3,168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지방채)
55	고용평등과	7,392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성립전)(지방채)
56	고용평등과	29,572	새일센터 운영지원(지방채)
57	고용평등과	55,803	새일센터 운영지원(지방채)
58	고용평등과	4,272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지방채)
59	보육정책과	1,944,593	영유아보육료 지원(지방채)
60	보육정책과	1,628,125	어린이집 확충(성립전)(지방채)
61	아동돌봄과	27,498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방채)
62	아동돌봄과	63,557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방채)
63	아동돌봄과	31,131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지원(지방채)
64	아동돌봄과	4,761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지방채)
65	여성비전센터	10,624	기간제근로자보수(지방채)
66	여성비전센터	7,392	기간제근로자보수(성립전)(지방채)
67	여성비전센터	1,537	비정규직 공정수당(지방채)
68	여성비전센터	600	심리치유센터 운영비(지방채)
69	여성비전센터	2,100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지방채)
70	여성비전센터	700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지방채)
71	여성정책과	19,863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방채)
72	여성정책과	53,290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지방채)
73	여성정책과	16,418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지방채)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8번-나

(단위 : 천 원)

구 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 기준)
74	여성정책과	43,846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지방채)
75	이민사회정책과	9,000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지방채)
76	동물복지과	8,808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지방채)
77	동물복지과	30,000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구조차량(지방채)
78	동물복지과	20,000	혈구형태학분석기(지방채)
79	의료자원과	7,800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지방채)
80	의료자원과	1,350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지방채)
81	보육정책과	256,963	시간제보육 지원(지방채)
82	노동정책과	50,000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지방채)
83	도로안전과	400,000	비점오염저감 시설설치 감리비(지방채)
84	아동돌봄과	28,848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인력 지원(지방채)
85	아동돌봄과	197,128	방과 후 야간 연장 돌봄보조 인력지원(지방채)
86	아동돌봄과	19,232	방과 후 야간 연장 돌봄보조 인력지원(지방채)
87	노인복지과	57,750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돌봄 보조 인력지원(지방채)
88	노인복지과	28,87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돌봄 보조 인력지원(지방채)
89	정신건강과	57,696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지방채)
90	복지정책과	125,939,986	고유가 피해지원금(지방채)
91	복지정책과	136,499	일상돌봄서비스사업(지방채)
92	응급의료과	36,000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지방채)
93	장애인자립지원과	206,77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방채)
94	장애인자립지원과	65,346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지방채)
95	복지사업과	2,700,000	경기도형 긴급복지(지방채)
96	건강증진과	11,027,7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지방채)
97	자원순환과	1,110,900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지방채)
98	버스정책과	17,797,491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지방채)

## 사. 보전수입 등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020억 원) 대비 **594억원 증가한 1,61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94억원 증액** 편성함.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목 중 순세계잉여금은 2026년 본예산에 1,000억원과 제1회 추경 59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594억원**으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sup>12)</sup> >

(단위 : 억 원)

구 분	2026년 (제1회 추경안)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본예산 (a)	1,000	3,500	6,000	600	-
최종예산 (b)	1,594	3,647	7,005	6,675	6,535
증감액(c=b-a)	594	147	1,005	6,075	6,535

## 아. 내부거래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조 4,572억 원) 대비 **13억원 증가한 1조 4,585억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13억원 증액 편성.**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5번 가.

## 자. 검토 의견

- 세입예산 규모 및 재원 중 경기도의 주요 재원이 지방세 수입이고(일반회계 세입 항목 비중의 43% 차지), 지방세 수입 대부분을 취득세(50.7%)와 지방소비세(25%)가 차지하는 점을<sup>13)</sup>을 감안하면 **도세입은 부동산 경기 및 경제성장률에 기반한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영향을 크게 받음.**
-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 항목 비중의 47.9% 차지하여,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쳐 전체 세입의 90.9%를 차지함.
- **부동산 경기 및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정책적 기조 및 대외동향 등에 따라 움직이는 지표이며, 국고보조금 또한 국가의 정책기조에 따라 연동되는 세입으로 **도 자체적으로 세입을 크게 확대할 수 없음**
- **세수감소로 인한 경상적 일반재원의 감소와 지역개발기금의 지속적인 축소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고는 경향이 강함.**
- 신규 지방채 발행의 최소화, 사전적 적절성 평가 필요, 초과세수 발생 시 채무의 우선 상환 등 종합적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지방세체납액, 세외수입체납액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지방세 징수를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보전분)를 대신할 세입 확보, 전환 사업 없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 등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번.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 3. 세출예산

#### 가. 총괄현황

##### 1) 재원규모

<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재원 배분현황<sup>14)</sup> >

(단위: 억 원)

구 분	본예산(A)	1회추경 예산안 (B)	증감액 (C=B-A)	주요 증감사유
총 계	357,244	373,377	16,133	
법정·의무적 지출 등	316,648	332,059	15,411	
법적의무적경비	81,074	81,074	0	
국고보조금매칭	191,084	205,837	14,753	정부 내시 반영
용도지정	13,970	14,617	647	수도권 환승할인,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행정운영경비	6,182	6,182	0	
기타회계 등 전출금	18,012	18,023	11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393	393	0	
차입금이자상환	140	140	0	
예수금원리금상환	5,365	5,365	0	
예비비	428	428	0	
자체투자사업	40,596	41,318	722	정부추경 관련 자체사업 추진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6번 가.

○ 제1회 추경예산 증가 규모는 '26년 본예산 대비 **1조 6,133억원(5%) 증액한 37조 3,377억원**으로 편성함.

- 국비 등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단체간 부담 등에 따른 용도지정사업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13억원 증액** 편성함.

○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되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의 목적 적합성·예측 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 집행 가능성 등이 요구되므로, **추경에 요구된 자체사업 및 용도지정사업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임.**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 건	세 부 내 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 2) 분야(기능)별

<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재원 배분현황<sup>15)</sup> >

(단위: 억 원)

구분	본예산 (a)	1회추경 예산(안) (b)	증감액 (c=b-a)	주요 증감사유 (세부적으로 작성)
계	357,244	373,377	16,133	
일반행정	86,551	87,446	895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지원, 체납지원단 실태조사 지원 등 사업량 증가
교육	28,204	28,204	0	-
문화체육관광	6,486	6,496	10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지원 등 사업량 증가
환경보호	10,320	10,408	88	산불대책비,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등 사업량 증가
사회복지여성	173,386	185,842	12,456	고유가 피해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 사업량 증가
농림해양수산	10,830	11,095	265	농어업인 면세유 긴급지원, 조사료생산용 벧짚비닐 지원 등 사업량 증가
경제	12,961	13,021	60	자율주행서비스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등 사업량 증가
교통지역발전	28,506	30,865	2,359	The 경기패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사업 등 사업량 증가

○ 분야별 자원배분을 증액이 큰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여성과, 교통지역발전 항목 사업임.**

- (민생경제 방파제) 피해지원금 지원으로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36억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음.
- (도민이동권보장)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THE 경기패스’ 85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함.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6번 나.

## 나. 국비사업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총 197개 사업(부기명 기준), 기정액 (2,594억원) 대비 **1조 4,753억원 증액된 1조 7,347억원임.**

- 국비 등 1조 3,104억원, 도비 1,649억원을 증액 편성함.

< 제1회 추경예산안 국비사업 편성 현황(총괄)<sup>16)</sup> >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 기준)	기정액(a)			증감액(b)			예산액 (c=a+b)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197	2,594	2,454	140	14,753	13,104	1,649	17,347	15,558	1,789
국고보조금	93	960	891	69	14,157	12,608	1,549	15,117	13,499	1,61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9	1,018	955	63	210	121	89	1,228	1,076	152
기금	69	616	608	8	376	365	11	992	973	19
교부세	6	0	0	0	10	10	0	10	10	0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원,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25.7.16~20.) 호우 지방하천 재해복구’ 417억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사업’ 84억원, ‘안양도매시장 긴급 시설 개선’ 30억원,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건설’ 25억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15억원,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12억원 등 국비보조금의 법적 의무 경비를 편성하였음.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8번 가.

- (성립전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 국비사업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예산은 23개 사업, 기정액 대비 1,248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편성사유는, ‘(25.7.16.~20.)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4차)’ 734억원,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271억원(기금), ‘(25.7.16.~20.)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5차)’ 107억원 순임.

< 제1회 추경예산안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총괄)<sup>17)</sup>>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 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액 (c=a+b)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23	-	-	-	124,800	122,623	2,177	124,800	122,623	2,177
국고보조금	11	-	-	-	87,580	87,046	534	87,580	87,046	53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	-	-	-	5,405	3,777	1,628	5,405	3,777	1,628
기금	5	-	-	-	30,795	30,780	15	30,795	30,780	15
교부세	6	-	-	-	1,020	1,020	-	1,020	1,020	-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8번 나.

## 다. 자체사업

### 1) 신규편성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9개 사업(부기명 기준), 36억원임.<sup>18)</sup>
- 주요 신규 자체사업으로는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원,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7억원, ‘면세유 구입비 차액지원’ 6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 지원’ 4억원 등임.
- 지방재정법 제45조<sup>19)</sup>에 규정된 추경예산의 편성근거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본예산 편성 시 예상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의 발생여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등 사전 준비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통합·연계 가능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9번 가-A.

19)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sup>20)</sup> >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	신규편성 사유	공약 사업 여부
<b>자치행정국</b>				<b>1,728</b>		
1	조세정의과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28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을 통한 세수증대 복지연계 및 공공알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이바지	X
<b>농수산생명과학국</b>				<b>674</b>		
2	친환경농업 과	면세유 구입비 차액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00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경유·휘발유), 어업용 면세유(휘발유 등)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경영비 부담 절감	X
3	해양수산물과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4		X
<b>여성가족국</b>				<b>78</b>		
4	여성정책과	냉방비 특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	중동사태 관련 여성권익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냉방비 지원(3개월)	X
5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복지시 설 냉방비 특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	중동사태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냉방비 지원(3개월)	X
6	아동돌봄과	냉방비 특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	중동사태 관련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방비 지원(3개월)	X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4	중동사태 관련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지원(3개월)	X	
	민간위탁금		0.3	중동사태 관련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냉방비 지원(3개월)	X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0.6	중동사태 관련 경기남·북부아동일시보호소 냉방비 지원(3개월)	X	
7	아동돌봄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기타보상금	0.1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건 관련 도비 분담금 상환	X
<b>철도항만물류국</b>				<b>700</b>		
8	철도 건설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설비, 시설부대비	700	'26. 3.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필요 ※ 향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예정(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668, '26.3.25.)	O
<b>축산동물복지국</b>				<b>440</b>		
9	축산정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 지원	기타보상금	440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른 ASF 의심사료 회수·폐기 보상 지원	X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9번 가.

## 2) 증액편성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28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1,76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행정운영과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 대상

○ 주요증액 자체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6억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등 증액 편성하였음.

○ 2026년 본예산 심의시 감액된 사업을 재요구 한 사업은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 확정액(1,816억원) 대비 634억원을 추가 요구하였음.

< '26년 본예산안 심의시 감액(전액·일부)된 사업을 재요구 한 사업 내역<sup>21)</sup> >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2026년 본예산		1회 추경예산안 (b)	증액(c=b-a)	증액내역 및 사유
			요구액	확정액 (a)			
	교통국		194,600	181,600	245,000	63,400	
1	버스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194,600	181,600	245,000	63,400	부족 사업비 편성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2번

< 증액사업 편성 현황(30%이상 증액)<sup>22)</sup>>

(단위 :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1회추 경 예산안 (b)	증액 (c=b-a)	집행실적				증액편성 사유	공약 사업여부
							집행 액	집행 률	실집 액	실집 행률		
<b>총계</b>				<b>384,584</b>	<b>560,825</b>	<b>176,241</b>						
<b>의회사무처</b>				<b>6,120</b>	<b>7,297</b>	<b>1,177</b>	<b>367</b>	<b>6</b>	<b>367</b>	<b>6</b>		
1	법제과	소송수수료 및 의원 소송비 지원	사무 관리비	20	97	77	8	40	8	40	공무국외출장 관련 도의원 법률지원	X
2	언론홍보과	의정현안 시책홍보	공기관등 에대한경 상적위탁 사업비	6,100	7,200	1,100	359	6	359	6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조정	X
<b>도시주택실</b>				<b>1,664</b>	<b>33,384</b>	<b>31,720</b>	<b>838</b>	<b>50</b>	<b>563</b>	<b>34</b>		
3	주택정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03-01	-	924	924	-	-	-	-	본예산 편성 후 국비 통보	X
4	주택정책과	통합공공임대주 택 건설사업 지원	402-02	-	27,053	27,053	-	-	-	-	본예산 편성 후 국비 통보	X
5	주택정책과	통합공공임대주 택 건설사업 지원	403-01	-	2,768	2,768	-	-	-	-	본예산 편성 후 국비 통보	X
6	주택정책과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	309-01	-	58	58	-	-	-	-	본예산 편성 후 국비 통보	X
7	주택정책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308-01	1,664	2,581	917	838	50	563	34	본예산 편성 후 국비 통보	X
<b>복지국</b>				<b>115,692</b>	<b>162,863</b>	<b>47,171</b>	<b>67,579</b>	<b>58</b>	<b>67,329</b>	<b>58</b>		
8	복지정책과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출연금	3,000	6,000	3,000	3,000	100	2,750	92	간급 생활자금 수요 대응 및 복합지원으로 금융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X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1회추 경 예산안 (b)	증액 (c=b-a)	집행실적				증액편성 사유	공약 사업부 여부
							집행액	집행률	실 집행액	실 집행률		
9	복지사업과	경기도형 간급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4,965	7,665	2,700	1,738	35	1,738	35	경기 불황 및 물가 상승으로 간급복지 수요는 증기했으나, '26년 본예산은 '25년 대비 39% 감액 편성됨	X
10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107,727	149,198	41,471	62,841	58	62,841	58	예산 부족분 추가 확보 필요(복지부 '26년 최종 소요액 변경 통보)	X
<b>보건건강국</b>				<b>38,639</b>	<b>50,983</b>	<b>12,344</b>	<b>25,567</b>	<b>66</b>	<b>17,065</b>	<b>46</b>		
11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지방채)	자치단체경 상보조	35,533	46,561	11,028	23,560	66	15,530	44%	'25년 미지급금 상계분 및 출생아 수 증가분 반영	X
12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자치단체경 상보조	3,106	4,422	1,316	2,007	65	1,535	49%	'25년 미지급금 상계분 및 출생아 수 증가분 반영	X
<b>문화체육관광국</b>				<b>1,651</b>	<b>2,241</b>	<b>590</b>	<b>-</b>	<b>-</b>	<b>-</b>	<b>-</b>		
13	예술정책과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자체/직접)	민간경상 사업보조	1,651	2,241	590	-	-	-	-	경제위기에 취약한 문화예술분야 전시, 공연 행사 추가 지원 필요	X
<b>농수산생명과학국</b>				<b>26,265</b>	<b>39,994</b>	<b>13,729</b>	<b>8,000</b>	<b>30</b>	<b>8,000</b>	<b>30</b>		
14	농업정책과	농촌공간정비 (지방채)	자치단체 자본보조	514	839	325	-	-	-	-	이천시 1개소 신규사업 대상자로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공간 계획과 -1025(2026.3.2 3.)호)	X
15	농업정책과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125	290	165	-	-	-	-	'26.2. 신규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사회 서비스과 -676(2026.2.1 9.)호)	X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1회추 경 예산안 (b)	증액 (c=b-a)	집행실적				증액편성 사유	공약 사업부 여부
							집행액	집행률	실 집행액	신규집행액		
16	친환경농업과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9	37	18	-	-	-	-	신규사업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략작물 육성팀-776 (26.3.3.)호)	X
17	친환경농업과	인센티브 사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7	10	3	-	-	-	-	과수분야 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원예산업과-4 995(25.12.23. )호)	X
18	친환경농업과	배수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이 전 재원)	25,000	37,718	12,718	8000	32	8000	32	신규 착수지구 선정에 따른 증액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기반과 -177(26.1.12. )호)	X
19	친환경농업과	배수개선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	1,100	500	-	-	-	-	신규 착수지구 선정에 따른 증액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기반과 -177(26.1.12. )호)	X
<b>미래평생교육국</b>				<b>8,215</b>	<b>11,815</b>	<b>3,600</b>	<b>-</b>	<b>-</b>	<b>-</b>	<b>-</b>		
20	청소년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215	11,815	3,600	-	-	-	-	접수인원이 편성예산을 초과, '25년 신청률 및 '26년 3월말 신청률을 고려하여 증액	O
<b>여성가족국</b>				<b>481</b>	<b>845</b>	<b>364</b>	<b>261</b>	<b>54</b>	<b>132</b>	<b>27</b>		
21	가족정책과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401	705	304	201	50	100	25	시군 수요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반영	X
22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80	140	60	60	75	32	40	26년 신규 참여시군 (광주, 김포) 및 기 지원시군 지원대상자 증가추세 반영	O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1회추 경 예산안 (b)	증액 (c=b-a)	집행실적				증액편성 사유	공약 사업부 여부
							집행액	집행율	실 집행액	실 집행률		
<b>노동국</b>				<b>160</b>	<b>260</b>	<b>100</b>	-	-	-	-		
23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 정 상생협력 지원	민간경 상사업 보조	160	260	100	-	-	-	-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26.43) 에 따른 증액	O
<b>교통국</b>				<b>181,600</b>	<b>245,000</b>	<b>63,400</b>	<b>99,423</b>	<b>55</b>	<b>99,423</b>	<b>55</b>		
24	버스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운수업계 보조	181,600	245,000	63,400	99,423	55	99,423	55	부족 사업비 편성	X
<b>축산동물복지국</b>				<b>321</b>	<b>540</b>	<b>219</b>	-	-	-	-		
25	축산정책과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1	540	219	-	-	-	-	볏짚 사일리지 생산 및 보관에 필요한 비닐을 지원하여 조사료 활용도 제고 및 사료비 절감	X
<b>미래성장산업국</b>				<b>2,265</b>	<b>3,237</b>	<b>972</b>	<b>1,510</b>	<b>67</b>	<b>548</b>	<b>24</b>		
26	벤처 스타트업과	경기창업혁신 공간 운영	공기관등 에대한경 상적위탁 사업비	2,265	3,237	972	1,510	67	548	24	거점형 경기창업 혁신공간 운영경비 부족액 반영	O
<b>농업기술원</b>				<b>1,511</b>	<b>2,366</b>	<b>855</b>	<b>365</b>	<b>24</b>	-	-		
27	행정지원과	청사시설 관리·유지(자 체/직접) -법정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376	500	124	28	7	-	-	본예산시 8개월분 확보에 따른 잔분 및 증분 편성	X
28	행정지원과	청사시설 관리·유지(자 체/직접) - 청사유지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공공 운영비	1,135	1,866	731	337	30	-	-	본예산시 8개월분 확보에 따른 잔분 및 증분 편성	X

### 3) 감액편성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8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9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함.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시니어친화형) 22억원 감액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 생활밀착형) 18억원 감액
- 양평 강하-강상 도로확포장(지방채) 35억원 감액
- 특별기획 의원 인터뷰 11억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음.

#### < 감액사업 편성 현황(30%이상 감액)<sup>23)</sup> >

(단위 :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회추경 예산안 (b)	감액 (c=a-b)	집행실적		감액편성사유
							집행액	집행률	
<b>의회사무처</b>									
1	언론홍보과	특별기획 의원 인터뷰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100	-	Δ1,100	-	-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조정
<b>복지국</b>									
2	복지사업과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	민간경상 사업보조	101	66	Δ35	-	-	보건복지부 공모 결과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당초 1.5개소 → 변경 1개소)
3	복지사업과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 보조재원)	295	203	Δ92	73	25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 사업량 감소 (438명 → 301명)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1번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회추경 예산안 (b)	감액 (c=a-b)	집행실적		감액편성사유
							집행액	집행률	
문화체육관광국				6,000	2,000	△4,000	1,250	20.8%	
4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장애인 생활밀착형)	자치단체자 본보조	2,700	900	△1,800	500	18.5%	'26년도 국비 교부액 변동 (국비총액 미변동)
5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니어친화형)	자치단체자 본보조	3,300	1,100	△2,200	750	22.7%	'26년도 국비 교부액 변동 (국비총액 미변동)
미래평생교육국				657	298	△359	77	2	
6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10	-	△210	-	-	성평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 반영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 원과-526(2025.1 2.22.)호
7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회복지원시 설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447	298	△149	77	17	성평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 반영(수원 1개소 폐소)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 과-857(2026.3.1 6.)호
건설국				3,516	-	△3,516	-	-	
8	도로정책과	양평 강하-강상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3,286	-	△3,286	-	-	국토교통부 예산 사업간 조정('26.1.)에 따른 편성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586('26. 1.9.)호)
	도로정책과		시설부대비	200	-	△200	-	-	
	도로정책과		감리비	30	-	△30	-	-	

### 3

## 특별회계

1. 예산규모 : 4조 3,436억 원('26년 본예산 대비 103억 원 ↑, 0.24% ↑)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4조 3,333억 원)대비 103억원 증가한 4조 3,436억 원임.

(단위 : 억 원)

구 분	'26년 본예산 (A)	'26년 1회 추경안 (B)	증 감 (B - A)	비 고 (주요 증감내역 등)
합 계	43,333	43,436	103	
공기업특별회계(2종)	470	470	-	
판교테크노밸리	320	320	-	변경없음
고 덕 국 제 화 계 획 지 구	150	150	-	변경없음
기타특별회계(9종)	42,863	42,966	103	
의 료 급 여 기 금	22,620	22,620	-	변경없음
팔 당 호 관 리	42	42	-	변경없음
학 교 용 지 부 담 금	934	934	-	변경없음
광 역 교 통 시 설	1,869	1,869	-	변경없음
지 역 균 형 발 전	394	394	-	변경없음
소 방 안 전	15,655	15,655	-	변경없음
도 시 재 생	342	418	76	(세입) 도시재생사업 76억원(국비) (세출) 도시재생사업 76억원
지 역 자 원 시 설 세	199	199	-	변경없음
순 환 경 제	808	835	27	(세입) 국고보조금 16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원 (세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7억원

## 2.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가. 공기업특별회계 : 변경없음

나. 기타특별회계

○ (도시재생) 기정예산(342억 원) 대비 76억 원 증가한 418억 원

- 세입 : 국고보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도시재생사업) 76억 원
- 세출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69억 원, 도시재생사업(스마트기술) 7억 원

○ (순환경제) 기정예산(808억 원) 대비 27억 원 증가한 835억 원

- 세입 : 국고보조금(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6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원
- 세출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7억 원

## 3. 국비사업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부기명 기준), 기정액 대비 103억 원 증액하였음.

- 국비 등 92억 원 증액 및 도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함.

< 제1회 추경예산안 국비사업 편성 현황(총괄)<sup>24)</sup> >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 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액 (c=a+b)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3	-	-	-	103	92	11	103	92	11
국고보조금	1	-	-	-	27	16	11	27	16	1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	-	-	-	76	76	0	76	76	-
기금	-	-	-	-	-	-	-	-	-	-
교부세	-	-	-	-	-	-	-	-	-	-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8번 가.

## 4

## 주요사업

### 1.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자체/직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85p, 사업설명서 40p)

#### 《 예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26. 3. 31.기준]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구분	계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	비고
복지국 (복지정책과)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출연금)	계	6,000	3,000	3,000	
		도 비	6,000	3,000	3,000	

- 악화된 민생경제 속에 금융취약계층 안정망 구축을 목적으로 2026년도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이하 ‘경기극저신용대출 1.0’)’ 사업과 유사함.
- 경기도는 2019년 정책서민금융 조차도 접근이 어려운 극저신용자(8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고금리·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경기극저신용대출 1.0 사업은 총편성예산 1,508억원으로 총 대출인원 110,415명, 총 대출금액 1,374억원임.

<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1.0) 연도별 추진현황<sup>25)</sup>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예산액	150,800	3,000	50,000	50,000	47,800
대출인원	110,415	-	59,058	26,983	24,374
대출금액	137,433	-	44,944	46,991	45,498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제반 사항 마련으로 '20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경기복지재단)

\*\* 2026년도는 3월말 기준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2번 참조

- 2019년부터 2022년, 2026년 사업의 연도별 지원대상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수급자 등은 하위 20%), 이자율은 동일하나,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은 차이가 있음.**

<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연도별 지원대상 등<sup>26)</sup> >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6년*
대출인원	-	59,058	26,983	24,374	1,618
지원대상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수급자 등은 하위 20%)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수급자 등은 하위 20%)
대출한도	1인 300만원				1인 200만원
대출기간	5년 만기 일시 상환				최장 10년 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제약정)
기타	연 1%				연 1%
기타명칭	경기극저신용대출 1.0				경기극저신용대출 2.0

- 경기극저신용대출 1.0 사업은 현재까지 **완제상환은 총 101억원으로 상환율은 7.3%임.**

<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연도별 상환현황<sup>27)</sup>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2020년 (만기도래)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A)	110,415	137,433	59,058	44,944	26,983	46,991	24,374	45,498
완제상환(B)	16,136	10,094	14,997	8,348	780	1,118	359	628
상환율	14.6%	7.3%	25.4%	18.6%	2.9%	2.4%	1.5%	1.4%
부분상환(C)*	-	1,774	-	1,243	-	316	-	215
상환율	-	1.3%	-	2.8%	-	0.7%	-	0.5%
채무조정(D)	3,782	5,778	1,527	1,779	1,326	2,255	929	1,744
관리종결(E)**	488	585	271	216	148	246	69	123
잔여채권(A-B-C-D-E)	90,009	119,202	42,263	33,358	24,729	43,056	23,017	42,788

\* 채무조정, 관리종결, 제약정 등의 부분(분할)상환 금액

\*\*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경기복지재단) 심의·의결(법원등면책결정 385, 사망 103)

\*\*\* '26. 5월부터 만기도래 ※ 만기도래 채권('20년) 중 제약정 23,560건(39.9%), 20,455백만원(45.5%)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2번 참조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2번 참조

- (대출구조 문제점)<sup>28)</sup>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연 1% 초저금리로 5년만기 일시상환상품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설정금리와 비교할 경우 금리최저기준율이 2%인 점을 감안할 경우, 1%라는 초저금리 설정은 지나치게 낮은 대출금리 설정이라는 비판과 금리체계의 비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취하는 반면, 극저신용대출은 5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어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상환율이 취약한 구조를 가짐.**
- 금리의 적정성과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한 우려 및 극저신용대출 신청서 기재에 기반한 심사가 이루어져 **선정의 객관성 담보가 어려워** 정책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
- (대출운영체계 상의 문제점) 극저신용대출의 운영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대안금융기관들을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 및 접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점,
  - 기존 수행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행기관이 변경될 경우 대출상환 및 부실채권관리업무가 필수적인 **대출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점등이 지적됨.**
- (대출상환 및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환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대출상환관리체계 및 기관의 부재 등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출실행, 채권관리 및 상환관리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경기극저신용대출 2.0 2026년도 첫시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경기극저신용대출1.0, 2019~2022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8) 정책연구보고 2022-07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상환 및 지원관리체계 수립 연구(경기복지재단, 2022)

## 2.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자체/직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434p, 사업설명서 36p)

《 예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26. 3. 31.기준]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구분	계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	비 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계	245,000	181,600	63,400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도비	227,203	181,600	45,603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지방채) (운수업계보조금)	지방채	17,797		17,797	

- 경기도 시내버스는 2007년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편입, 버스환승 손실 지원율은 2026년 본예산 기준, 시내버스 16%, 마을버스 33%, 전철기관은 46% 비율로 손실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5개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율 및 변경사유<sup>29)</sup> >

(단위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변경사유(상세기재)
시내버스	39.0	34.6	32.4	25.8	16.0	예산 범위내 지원으로 매년 보전을 변동
마을버스	26.1	30.0	32.4	26.8	33.0	
한국철도공사	46.0	46.0	46.0	46.0	46.0	공동합의문에 의한 전철기관 보전을
서울교통공사	46.0	46.0	46.0	46.0	46.0	
인천교통공사	46.0	46.0	46.0	46.0	46.0	

- 2026년 본예산 편성당시 1,94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30억원이 감액된, 1,816억원이 의회심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집행부 요구액 또한 道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소요예산의 9개월분만 반영된 금액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12개월) 반영을 요구하였음.**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2번

- (인건비성 경비집행) 최근 5개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민영제 인건비 간접지원(400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하였으나, 2025년도부터 예산안이 크게 삭감된 반면, 민영제 인건비(400억원)는 기존대로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환승손실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었음.
- 이에, 환승할인 지원금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개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최종예산액<sup>30)</sup> >

(단위: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141,600,000	220,000,000	260,000,000	260,000,000	220,000,000	181,600,000
도비	342,480,000	66,000,000	78,000,000	78,000,000	66,000,000	54,480,000
시군비	799,120,000	154,000,000	182,000,000	182,000,000	154,000,000	127,120,000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민영제 인건비 간접지원	163,500,000	-	40,000,000	40,000,000	40,000,000	43,500,000

- (형평성문제) 2007년 시행된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는 거리비례 요금구조 기본구간 이내의 단거리 통행자와 비교하여 기본구간 이상의 장거리 통행자에게 유리한 요금 구조로, 최대 4회(5회 탑승)인 높은 환승 혜택에 따른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됨.<sup>31)</sup>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요구자료 1차-12번

31) 지방 대도시권 광역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재편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2.)

- (재정부담가중)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환승 손실금 증가, 환승할인 외의 청소년 할인, 노인 할인 등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지원금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됨.<sup>32)</sup>
- 이에,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개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현황<sup>33)</sup> >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합계	895,923,069	219,999,694	220,000,000	220,000,000	180,000,000	41,272,941	
소 계	600,561,772	159,052,305	154,853,399	146,484,283	103,687,890	21,833,461	
시내버스	469,907,320	133,501,939	125,789,300	113,952,187	75,909,073	12,442,642	
마을버스	130,654,452	25,550,366	29,064,099	32,532,096	27,778,817	9,390,819	
소 계	295,361,297	60,947,389	65,146,601	73,515,717	76,312,110	19,439,480	
한국철도공사	171,047,223	35,469,571	37,825,857	42,847,894	43,859,946	11,043,955	
서울교통공사	111,895,222	22,920,315	24,552,762	27,602,630	29,238,817	7,580,698	
인천교통공사	12,418,852	2,557,503	2,767,982	3,065,193	3,213,347	814,827	

\*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비 급등 등으로 조기지원분(2개월) 제외 / 26년 3월말 기준

32) 지방 대도시권 광역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재편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2.)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2번

### 3. 지방채 발행 (공통 소관)

○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 발행할 수 있음.

(단위: 억 원)

구 분 (장·관·항)	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지방채·국내차입금·지방채증권	7,180	5,202	1,978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1,978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대부분 국비 사업의 도비부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었는데,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 통상적인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부서별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총 95건의 지방채 증액을 편성한바,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나, **사업부서별 지방채 발행은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총괄부서를 통한 부채규모 관리, 상환계획 등 **통합적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